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9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권수정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기대, 김달호,  
김재형, 김제리, 문장길,  
박기재, 송아량, 송재혁,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병도, 이상훈,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채유미, 최 선,  
최용식, 황인구 의원(23  
명)

## 1. 제안이유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이 제정됨.
- 이에 따라 노동자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조례 적용 대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노동자'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2)
-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2호)
- 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

4의2.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를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2. 제1호를 제외한 시 관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재해 예방”을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적용대상 사업주는”을 “사업주는”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p> <p>4. (생략)</p> <p>&lt;신설&gt;</p> <p>5. (생략)</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p> <p>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p> <p>4. (현행과 같음)</p> <p>4의2.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대상) -----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관리하</p>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과 그 자회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략)
-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 10. (생략)

③ (생략)

④ 시장은 제3조 적용대상의 노동안전보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2. 제1호를 제외한 시 관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

<삭 제>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

3.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조제1호 -----  
-----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주의 협조) 제3조의 적용 대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  
-----  
-----  
-----  
-----.

1.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2021012800000004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권수정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1.28	
회신일 : 2021.02.01	내용문의 : 02-2180-7943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2조제3호(노동자의 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6조제2항제2호(중대산업 재해예방 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6조제2항제2호(중대산업재해예방 실태조사)]

1) 추계결과 ≙ 10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2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중대산업재해예방 실태조사는 동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3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00,000천원
  - 총비용 = 중대산업재해예방 실태조사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중대산업재해예방 실태조사 (제6조제2항제2호)		50,000	-	-	50,000	-	100,000
	소계(b)		50,000	-	-	50,000	-	100,000
□ 총 비용(b-a)			50,000	-	-	50,000	-	100,000

○ 실태조사 : 연간 비용 50,000천원×2회(2021, 2024년)=100,000천원

※ 연간 비용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노동취약계층 작업환경 실태조사’ 예산 50,000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나. 기술적 추계 곤란[제2조제3호(노동자의 정의), 제3조(적용대상)]

○ 안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안 제3조 개정에 따라 서울시 관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로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관련 사업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규모 등을 현재로서는 산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참고] 2021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관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산출근거	예산액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계	753,200
	노동취약계층 작업환경 실태조사	50,000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작	20,000
	산업안전보건교육	14,000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19,200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홍보 등	50,000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온라인 플랫폼 개발	150,000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노동환경 개선자금	300,000
	배달대행업 종사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150,000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